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30호 2018. 1. 22(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3-298호선 외 5개 노선) 공사완료 공고 ----- 16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6호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1.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A-2	34	2,370.5	1	391.3	도로결정 86.9㎡	A-2	34	2,370.5	1	391.3	도로결정 86.9㎡
			2	167.1					2	167.1	
			3	308.9					3	308.9	
			4-1	189.5					4-1	184.9	
			4-2	184.9					4-2	189.5	
			4-3	268.8					4-3	268.8	
			4-4	190.5					4-4	190.5	
			4-5	190.2					4-5	190.2	
			5-1	234.9					5-1	234.9	
			5-2	244.4					5-2	244.4	

○ 단독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34	4-1	획지 분할	획지선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4-2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건지로 72-9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 2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과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제1항 중 ‘포함한 150명’ 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200명’ 으로 개정하고자 함.
- 제4조제2항 중 ‘기업’ 을 ‘기업체 임원(任員)’ 으로 개정하고자 함.
- 제9조제2항 중 ‘30명’ 을 ‘50명’ 으로 개정하고자 함.
- 제10조제2항 중 ‘30명’ 을 ‘35명’ 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62,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포함한 150명”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2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을 “기업체 임원(任員)”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3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30명”을 “35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기업대표, 주민대표 등 3명의 공동대표를 <u>포함한 15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협의회에 관심이 있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구민, 관련 분야 공무원, 학계, <u>기업</u>, 시·구의회 의원, 그 밖의 전문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③·④ (생략)</p>	<p>제4조(협의회 구성) ① ----- ----- ----- ----- <u>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200명</u> ---.</p> <p>② ----- ----- ----- <u>기업체 임원(任員)</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생략)</p> <p>②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구의원, 공무원 등 <u>30명</u>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생략)</p>	<p>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50명</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분과위원회) ① (생략)</p> <p>② 각 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35명</u> ----- -----.</p> <p>③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7조)
 -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 8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안전총괄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안전총괄실)
 - 전화번호 : 032)560-4703 (팩스 : 032)560-2735)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유선전화	() -	통신사명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확인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확인	①	②	③
	피해 구분	①	②	③	
	피해 원인	①	②	③	
	용자신청 여부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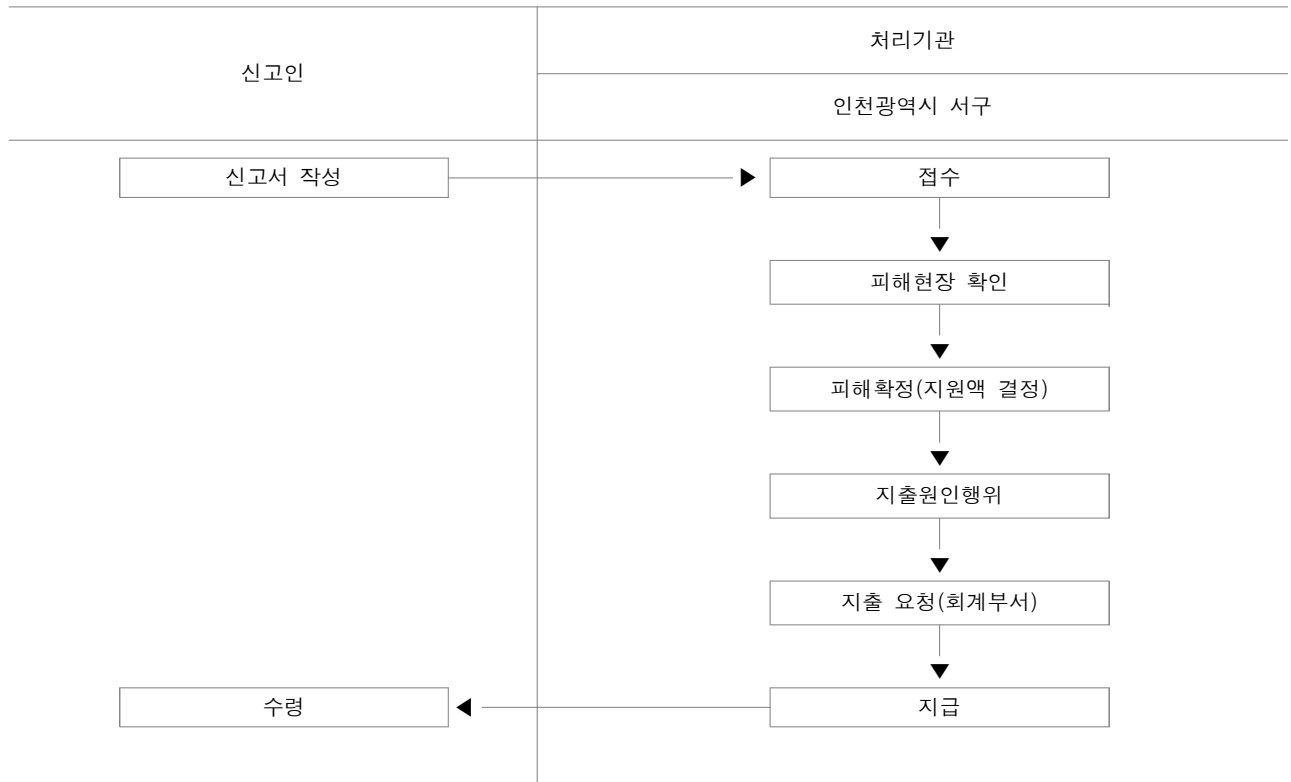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2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3-298호선 외 5개 노선)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3호(2017.2.06.) 및 제2017-19호(2017.2.2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43호(2017.11.06.)로 실시 계획(변경) 인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중3-298호선 외 5개 노선, 사업명: 중로 3-298호선 외 5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8. 1.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3-298호선 외 5개 노선)
 - 명 칭 : 중로 3-298호선 외 5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면적 (㎡)							
도로	중로	3	298	12	1,123	국지도로	85	중로 1-26	소로 1-47	일반도로	2017. 2. 6.	-
도로	중로	3	299	12	3,131.4	국지도로	264	대로 2-32	소로 1-47	일반도로	2017. 2. 6.	-
도로	소로	1	47	10	2,750.6	국지도로	265	소로 3-354	대로 2-32	일반도로	2017. 2. 6.	-
도로	소로	1	52	10	714	국지도로	69	중로 3-299	교통광장	일반도로	2017. 2. 6.	-
도로	소로	1	53	10	894	국지도로	79	가좌동 556-64 (소로 1-54)	중로 3-299	일반도로	2017. 2. 6.	-
도로	소로	1	54	10	1,376.2	국지도로	126	가좌동 556-54	가좌동 556-63	일반도로	2017. 2. 27.	-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코스모화학(주) 함재경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리 55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